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37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개 요	1
【이용호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이용호의원안】 (지방공무원법)	3
II.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내용	4
2. 검토의견	6

I. 개 요

【이용호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1. 28.

다. 회부연월일 : 2022.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제69조제1호).

【이용호의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1. 28.

다. 회부연월일 : 2022. 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제61조제1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및 제69조제1호¹⁾).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3조(결격사유) ----- ----- -----.
1. ~ 6의4. (생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u> <u>중 「개인정보보호법」 제</u> <u>70조 및 제71조에 규정된</u> <u>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u> <u>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u> <u>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u> <u>지나지 아니한 자</u>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내용이 같아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대표로 기재하였음(이하 같음).

현행	개정안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9조(당연퇴직) ----- ----- -----.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 -----. -----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또는 제71조에 규정된-----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²⁾,

특히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이나 배임을 범하거나(제6호의2)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제6호의3)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 해당하도록 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³⁾.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년간 1,101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해당 개인정보가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에 이용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및 제71조⁴⁾에 규정된 죄

3)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한 연혁

구분	결격사유	비고
횡령, 배임 관련 (현행법 제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호 신설 (2010. 3. 22. 일부개정, 시행)
성폭력범죄 관련 (현행법 제6호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호 신설 (2015. 12. 24. 일부개정,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

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도입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존 법령에서 개정안과 같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횡령·배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익침해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한편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하여 경합범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360

로6),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33조제6호의2, 제6호의3과 같이 현행법의 벌금형의 분리 선고⁷⁾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은 헌법상 규정된 공무담임권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 여부는 현행법체계의 결격사유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6)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위헌소원에서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새마을금고법 제21조가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이하 ‘분리 선고 규정’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